

■ 주민등록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3. 1. 10.>

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(제31조의2 관련)

1.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
 - 가.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)
 - 나. 지방자치단체
 - 다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 - 라. 「국민연금법」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
 - 마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
 - 바. 교육청
 - 사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아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자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제2호의 제공요청 대상 자료를 보유한 기관
2. 요청 자료
 - 가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관한 자료
 - 나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에 관한 정보
 - 다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정보
 - 라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관한 정보
 - 마. 「국민연금법」 제7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정보(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그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)
 - 바. 「국민연금법」 제50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정보
 - 사. 「국적법」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 상실신고 자료
 - 아. 「기초연금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
 - 자. 「병역법」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
 - 차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

- 카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6호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
- 타. 「아동수당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아동에 관한 정보
- 파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에 관한 정보
- 하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
- 거. 「재외국민등록법」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
- 너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자료
- 더.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자료
- 러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
- 머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 및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에 관한 정보